

대법원 2023. 3. 16 선고 2019재다2996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3. 3. 16 자 2019재다29967 결정

대법원 2019. 11. 28 선고 2019다265796 판결

전 문

원고(재심원고) A

피고(재심피고) B빌딩관리단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최원락

판 결 선 고 2023. 3. 16.
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다265796 판결

주 문

재심청구를 기각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.

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(재심원고)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.

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박정화, 대법관 김선수, 주 심 대법관 노태악, 대법관 오경미